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영훈	900322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김영호	900330 - *****	강원도 강릉시 솔울로
나홍식	901005 - *****	강원도 강릉시 하평4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고영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영훈은 '16.6.30. 본인이 모집한 KB생명보험(주) '무배당 KB슬림업연금+종신보험' 보험계약 1건(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40만원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영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호는 '16.6.30. 본인이 모집한 KB생명보험(주) '무배당 KB 국민의 평생 종신보험1종' 등 보험계약 2건(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40만원
나홍식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나홍식은 '16.6.30. 본인이 모집한 DB생명보험(주) '무배당 유니버설 더블종신보험' 등 보험계약 2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50만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